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1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8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3. 19
다. 상정·의결일자 : 2003. 3.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시행 2002.11.14)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낚시어선업신고에 관한 신고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하도록 개정되어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신설)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농수산 관계란중 낚시어선업 신고란 신설(안 별표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낚시어선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낚시어선업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를 법제21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수료 원가분석과 입법예고 등

-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낚시어선업 신고시 수수료 부담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우리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낚시어선업법이 언제 제정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없었는가?
- 답 : 1995년 낚시어선업법이 제정되었으며, 금번 개정전까지는 수수료 규정이 없었음. 금번 개정 되면서 수수료 규정을 둠.
(개정 2002. 5. 13. 시행 2002. 11. 14)
- 문 : 신고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 향후 보상 관계가 따르는 부분은 없는지?
- 답 : 민원 수수료이며, 다른 보상 관계와는 관련이 없음.
- 문 : 조례 개정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지역내 낚시어선업자를 보면 실제 낚시어선업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영업이 되어지는 인상을 주고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답 : 사실상 어민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할 수역이 넓고 영업시간 규정이 없어 지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안전운항 등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3.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